

GS 리테일 내부거래위원회운영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3 인 이상 포함되고,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제 4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 7 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(위원회권한)

- ①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 조, 상법 제 398 조, 상법 제 542 조의 9 제 3 항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일정 규모 이상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 거래행위에 대해 심사·승인을 한다.

제 6 조(위원회회의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, 이사회 의장,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위원회의 소집 통지는 회일 7일 전 통지하는 것으로 하되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, 위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은 이후 개최되는 최초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.

제 8 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대규모내부거래의 승인
- 2. 기타 상법상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거래행위의 승인

제 9 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0 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1 조(간사)

-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그 결의로 간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2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(2011. 4. 25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 년 4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5. 17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 년 5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2. 8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 년 2 월 8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3. 25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5. 11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 년 5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.